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98 발의연월일: 2021. 2. 25

발 의 자:노웅래·문정복·김민기

한준호 • 인재근 • 홍성국

송옥주 • 윤준병 • 전혜숙

김홍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할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무와 함께 계획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지원) ① 지방자
	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
	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산업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u>야 한다.</u>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여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사
	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u>수 있다.</u>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
	<u>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